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4차 여성가족위원회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학교 밖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·치유를 위한 연계 지원〉
■ 윤건영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04186호)

2024. 11.

여 성 가 족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이옥순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학교 밖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·치유를 위한 연계 지원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윤건영의원 등 11인
2. 제 안 일 : 2024. 9. 23.
3. 회 부 일 : 2024. 9. 24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, 청소년 중 도박 위험집단 비율이 4.8%에 달했음.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자 2,925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1,035명이 청소년이었음.

문제는 「학교보건법」 등 현행법에 따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만,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지원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.

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로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해 학교 밖 청소년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(안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1. 학교 밖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·치유를 위한 연계 지원

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 따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의 교육 및 상담 연계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2조 제2항제7호 신설).

현행	개정안
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 ① (생략)	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7.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 따른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과의 교육 및 상담 연계</u>
<u>7.</u> (생략)	<u>8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1)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

1)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.

1. ~ 8. (생략)가에 관한 사항

9.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(이하 “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”이라 한다)의 실시에 관한 사항

제14조(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)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

로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「교육기본법」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「학교보건법」 제9조2)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범주에 도박 중독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하여금 도박중독 예방·치유를 위한 상담·교육·홍보,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음.

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(이하 “예방치유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1. 예방·치유를 위한 상담·교육·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2. 조사·연구·분석 및 평가
3. 예방·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
4.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·협력
5.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·재활 사업 지원
6. 예방·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
7.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
8.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
9.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·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

제18조의4(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)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「교육기본법」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,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2) 「**학교보건법**」 제9조(**학생의 보건관리**)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, 질병의 치료와 예방, 음주·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(誤用)·남용(濫用)의 예방, 성교육,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,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 2018~2022년 도박중독예방교육 참여 학생 수 >

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362,581명	551,243명	405,225명	514,883명	643,484명

자료: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

그런데,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전국 시·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‘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’을 실시한 결과, 검거자 2,925명 중 청소년(19세 미만)이 1,035명(35.4%)으로 집계되는 등 청소년 도박문제가 대두되고 있음.³⁾

특히,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인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4.8%, 학교 밖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12.6%로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도박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.

< 청소년 도박문제 수준 현황 >

구 분	사례수	비문제군	문제군	계
재학 중 청소년	18,444명	95.2%	4.8%	100%
학교 밖 청소년	500명	87.4%	12.6%	100%

출처: 「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」,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

3) 출처: 경찰청 보도자료(‘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’ 6개월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), 2024. 4.25.

이에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 따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.

한편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현행법 제11조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⁴⁾ 및 여성가족부 지침⁵⁾에 따라 성폭력예방교육, 자살예방교육, 마약·도박예방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과 관련 필수교육⁶⁾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.

또한, 현행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⁷⁾에 따라 자살·자해, 마약·약물류, 도박 등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 유형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,

4)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(자립지원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, 법률교육,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.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5조의2(자립지원)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의 지원은 강의, 시청각교육,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경제, 법률, 문화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소양(素養)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다.

5) 2024년 청소년 사업 안내(Ⅱ), 2024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매뉴얼

6) 필수교육: 근로권익교육, 아동학대예방·인권교육, 성폭력예방교육,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, 성교육, 자살예방교육, 마약·도박예방교육

7)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상담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, 진로상담,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3조(상담의 방법과 내용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통하여 실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,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은 청소년의 심리,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등에 관하여 실시한다.

문제 진단 후 보다 심층적인 상담·치료 등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제2호8)에 따라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9)에 따른 자살예방센터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10)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,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음.

2024년 8월 기준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5,353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예방교육(자체 668명, 연계 4,685명)을 실시하였으며, 센터 사례 등록 시 ‘심리정서·환경척도’를 활용하여 도박문제 진단 후 위험군 청소년에 대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 연계·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.

8)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·협력

9)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자살 관련 상담
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
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
4.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
5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6.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·훈련
7.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10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5조의3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, 마약, 도박,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(이하 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
2. 중독자 대상 상담, 치료,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
3.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
4.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
5.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< 2021~2024년(8월 기준)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도박예방교육 실적 현황 >

구 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	141명	147명	296명	668명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	10,866명	5,240명	13,258명	4,685명

주: 사감위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, 청소년쉼터, 미인가 대안교육기관, 보호관찰소 등에 실시한 실적임
자료: 여성가족부

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의 교육 및 상담 연계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도박 중독과 관련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봄.

다만, 현행법 제12조제2항제2호는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·협력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

개정안과 같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연계하도록 특정해서 명시할 경우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연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.

그런데,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관리하는 도박문제예방센터는 전국적으로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.
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16개 시도에 6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
 바, 현행법과 같이 학교 밖 지원센터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도박문
 제예방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을 적절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
 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.

< 도박문제예방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>

(단위: 개소수, 2024. 10월말 기준)

지역명	도박문제예방센터 (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)	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	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
서울	1	3	26
부산	1	3	17
대구	1	2	9
인천	1	5	9
광주	1	5	6
대전	1	5	3
울산	-	2	5
세종	-	-	1
경기	2	10	32
강원	1	4	13
충북	1	2	13
충남	-	2	16
전북	1	4	10
전남	-	2	23
경북	1	2	15
경남	1	6	21
제주	1	3	3
계	14	60	222

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 및 상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, 현행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 ‘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’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도박예방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(교육, 상담지원)를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인력(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 등)을 활용하고 있으므로,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예방교육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가 담당하고, 지원센터의 종사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게이트키퍼 교육¹¹⁾을 이수하도록 하며, 도박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관련 상담은 예방치유원으로 연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.

문 의 처
02)6788-5645

11)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도박중독예방교육 강사 제공 및 게이트키퍼 교육 추진,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의 역할 수행